

<b>&lt;별표&gt;</b>	
<b>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원정원표</b>	
<b>○ 별정직</b>	
- 비서(7급상당)	1
- 속기사(7급상당)	1
- 속기사(8급상당)	2
- 속기사(9급상당)	1
- 비서(9급상당)	1
<b>○ 별정직 또는 일반직</b>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b>○ 일반직</b>	
- 지방서기관	1
- 지방행정주사	3
- 지방행정주사보	3
- 지방행정서기	3
- 지방행정서기보	2
<b>○ 기능직</b>	
- 8등급 지방기계원 또는 지방 전기원	2
-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필기)-표결사	1
-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
-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
- 9등급 지방방호원(방호)	1
- 10등급 지방방호원(방호)	1
- 10등급 지방운전원	2

<b>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b> <b>실 사 보 고 서</b>  1995. 3. 2. 총무재무 위원회	<p>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4. 12. 31에 공포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에 두는 실·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p> <p>나.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실 5국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li> </ul> </li> <li>○ 3실(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5조)</li> <li>○ 5국(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소속 24개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10조)</li> </ul>
<b>1. 심사경과</b>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18일</p> <p>다. 상정일자 : 제27회의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5. 3. 2.)상정의결</p>	
<b>2. 제안설명의 요지</b> <p>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춘 기</p> <p>가.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대     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칙으로 위임함(안 제11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변(이춘기 총무과장): 환경과는 대기 및 수질오염등 공해발생관련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감사실의 순찰은 구의 전반적인 외형적순찰을 대상으로 순찰함.</li> </ul>
<p>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의(황태식 위원): 지하수계의 신설이 유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에는 행정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94. 3.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5. 1. 1부로 시행됨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변(이춘기 총무과장): 하수과·징계의 주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었고 지하수개발에 따른 추진업무가 발생되므로 명칭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주요내용을 보면 3실 5국 24개과와 그 분장사무는 종전규칙과 별 차이점이 없으나 재무국소속 세무1·2과를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로 분리하여 세금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각각 분리시켰으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의(김유현 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 산업과와 환경과의 통폐합 검토 및 청소업무의 민영화 검토의사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국소속 토지관리과와 도시정비국소속 지적과를 통·폐합하여 재무국소속의 지적과로 분리하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변(이춘기 총무과장): 향후 연구검토 사항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정비국소속 지역교통과를 업무성질별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시켰습니다.</li> </ul>	<p>5. 토론요지 : 없음</p>
<p>4. 질의 및 답변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의(김문태 간사): 감사실의 환경순찰 업무와 환경과업무의 차이는?</li> </ul>	<p>6. 심사결과 : 원안가결</p> <p>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8. 기타사항 : 없음</p>

####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안	378
번호	

제출일자 : 1995. 2. 17.

제출자 : 마포구 청장

####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4. 12. 31에 공포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에 두는 실·국 및 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3실 5국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

국, 채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전설국

- 3실(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 5국(총무국, 채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속 24개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10조)
- 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칙으로 위임함.(안 제11조)

###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 12. 20. 법률 제4789호) 제15조,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 제10조

### 4. 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 필요성 : 불필요

###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두는 실·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국의 설치)** 마포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총무국·채무국·시민국·도시정비국 및 전설국을 둔다.

**제3조(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4. 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 제4조(감사실) 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감사·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
  3.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 제5조(시민봉사실) 시민봉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서·관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2.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3. 제증명의 발급·진정의 접수처리·호적에 관한 사항
  4.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제6조(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기획예산과·국민운동지원과·생활체육과 및 민방위과를 둔다.
- ②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사·조직·보안에 관한 사항
  2.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동행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청내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③ 기획예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배정·예산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투자심사 및 재정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p>4.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p> <p>5. 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p> <p>④ 국민운동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2. 새마을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4.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5.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ol> <p>⑤ 생활체육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활체육·전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2. 생활체육·전전생활관련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li> </ol> <p>⑥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2. 전시운영계획·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li> <li>4.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li> <li>5. 도시방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li> <li>6. 병사에 관한 사항</li> </ol> <p>제7조(재무국) ① 재무국에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 및 지적과를 둔다.</p> <p>②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p> <p>2. 공사의 도급·물품의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p> <p>3. 지출 및 세입·세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p> <p>4. 회계검사·공체·직원저축에 관한 사항</p> <p>5.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p> <p>③ 세무관리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세입의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li> <li>2. 취득세·등록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li> <li>3. 재산세·종합토지세·농지세 징수에 관한 사항</li> <li>4. 목적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li> <li>5. 자동차관련 각종 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li> <li>6. 사업소세·도축세·마권세 및 면허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li> <li>7. 구세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li> </ol> <p>④ 부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득세·등록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li> <li>2. 재산세·종합토지세·농지세 부과에 관한 사항</li> <li>3.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li> <li>4. 자동차관련 각종 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li> <li>5. 사업소세·도축세·마권세 및 면허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li> <li>6. 토지등급설정·수정 및 과세표준액 조정에 관한 사항</li> <li>7. 기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li> </ol> <p>⑤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	--

1.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2. 지적전산·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3. 토지 이용정리에 관한 사항
4. 택지소유상한규제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
5.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6. 토지거래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7. 부동산중개업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시민국) ① 시민국에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산업과·환경과 및 청소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3. 장애자복지에 관한 사항
4.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복지·여성복지·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유아교육·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3. 보호여성 선도 및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
4. 소관 법인의 시설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근로청소년복지·요보호아동예방 및 불우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④ 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는 제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유기장업 및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⑤ 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의 지도·공장등록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물가조사·지도단속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육성 및 공산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연료(가스류포함)판매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6.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7. 가스시공업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농업·수산업 및 축산업에 관한 사항

⑥ 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소음·진동·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⑦ 청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

2.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5. 공중변소의 설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정비국) ① 도시정비국에 주택과·도시정비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및 건축과를 둔다.

② 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2. 시영주택의 관리·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5.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도시정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도시개발·도심재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개발제한 구역은 제외)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 사항

④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자동차 동원 및 특별수송대책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운수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정비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⑤ 교통지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 운수사업의 인·허가사항과 관련된 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2.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설치허가 및 관리 지도등에 관한 사항

4.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⑥ 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3.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

4. 건축업자 지도감독

5.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건설국) ① 건설국에 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건설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지하도·하천·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접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및 운행제한 단속에 관한 사항

6.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토목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
2.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
4. 지하도·지하광장·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④ 하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행정의 종합조정
2. 하수도·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유지 관리
3.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4. 배수펌프장 및 배기시설의 관리
5.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공원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원·녹지관리의 총괄
2.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3.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4. 공원녹지대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5.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

제11조(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 ①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5. 3. 2.

총무재무 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27회의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5. 3. 2.)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춘 기.

#### 가.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4. 12. 31에 공포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규칙으로 되어 있던 정원규정을 구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본 조례로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마포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구 본청 : 905명
- 직속기관(보건소) : 71명
- 동 : 487명

○ 서울특별시마포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위임함.(안 제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박관수)

○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의 종전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이 '94. 3. 16자로 개정된 지방자